

[별표 3]<개정 1990.12.27>

위생접객업자 및 위생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관련)

1.숙박업

가. 객실의 수용제한

- (1)호텔업 및 여관업에 있어서는 객실면적 3제곱미터당 1인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2)여인숙에 있어서는 객실면적 1.5제곱미터당 1인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객실등의 청결

객실·응접실·식당·조리장·현관·욕실·세면장·화장실·복도 또는 계단등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다. 침구등의 청결

- (1)요·이불·베개등 침구는 청결한 포를 씌워야 한다.
- (2)요·이불·베개등 침구의 포는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 (3)요·이불·베개등 침구는 수시로 일광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알맞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욕실의 위생관리

- (1)욕조에 냉·온수를 항상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냉·온수도전을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여관업 및 여인숙의 경우에는 냉·온수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욕수는 목욕장업의 욕조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세면장의 위생관리

- (1)세면장에 냉·온수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 (2)수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바. 환기

- (1)환기용 창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조명

- (1)객실·응접실·식당등의 조명은 4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조리장의 조명은 5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복도·계단은 20룩스(심야에는 1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욕실·세면장·화장실의 조명은 2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배수 및 방습

- (1)배수시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빗물·오수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복도등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는 바닥의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충분한 방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타

- (1)현관 접객대에는 숙박업허가증(신고필증), 위생등급표 및 객실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영업종사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2)숙박요금표에 의한 요금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3)객실입구에는 객실번호 또는 객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4)모든 숙박자에 대하여 숙박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의 수학여행 또는 10인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여행의 경우에는 인솔자 또는 대표자의 숙박자 명부만을 작성한다.
- (5)업소안에서 숙박자에게 퇴폐적인 음란한 영화 또는 음반을 관람하게 하거나 들려주거나 그 관람 또는 들려주는 것을 묵인 또는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6)업소내 일정한 장소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보관함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7)유객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8)업소의 표시는 허가된 업소명칭(상호) 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9)시·도지사가 정하는 휴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수돗물(공동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포함한다)이 아닌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연 2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1)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림·사진·장식 또는 설비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12)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의료법에 의한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14)객실의 음용수는 끓인 물이거나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는 물을 깨끗한 용기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

가. 공동준수사항

- (1)입욕자가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신고필증)·목욕요금표·위생등급표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목욕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 (2)현관·탈의실·욕실·화장실·복도·휴게실 기타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로서 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곳의 조명도는 20룩스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3)목욕장의 시설은 항상 청결하도록 하고,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매월 2회이상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 (4)탈의실·휴게실·화장실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월 1회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5)욕수는 원수(욕조등으로 주입되는 물을 말한다) 및 욕조수로 구분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종류별 수질검사방법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온천수등의 욕수에 대하여는 대장균군에 대한 수질기준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원수

- 1)색도는 5도이하로 하여야 한다.

- 2)탁도는 2도이하로 하여야 한다.
- 3)수소이온농도는 5.8이상 8.6이하로 하여야 한다.
- 4)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5)대장균군은 50밀리리터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내)욕조수

- 1)탁도는 3도이하로 하여야 한다.
 - 2)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가 되어야 한다.
 - 3)대장균군은 1밀리리터중에서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6)오수를 욕조에 혼입하거나 유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7)원수의 수질검사는 연 1회이상, 욕조수의 수질검사는 6월마다 1회이상 공공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검사결과서를 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발한실(증기실 또는 건열실을 말한다)의 상부온도는 그 구조가 습식일 경우에는 섭씨 60도 내외로, 그 구조가 건식일 경우에는 섭씨 80도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발한실의 안팎의 벽면에 온도계와 발한방법, 이용시 주의사항등에 관한 게시문을 붙여 놓아야 한다.
 - (9)목욕장에서 이발·면도·머리카락 염색 또는 세탁(욕실외의 일정한 세탁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욕실안에서의 면도·가족탕이나 터키탕에서의 면도·이발·염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터키탕의 입욕보조자에 대하여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11)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림·사진·물품·광고·장식 또는 설비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12)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에 오손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고, 그 시설 및 설비의 효용을 자주 검사하여야 한다.
 - (13)연료는 연료저장장외의 장소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 (14)재는 재의 처리장에서 처리하되,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화기가 없어진 후가 아니면 재의 처리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15)시·도지사가 정하는 휴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16)전염성질병자로 인정되는 자, 타인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병자 또는 술에 취한 자에 대하여는 목욕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업소의 표시는 허가된 업소명칭(상호) 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8)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의료법에 의한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시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9)욕조에 설치한 냉·온수전에는 냉·온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업종별 준수사항

(1)일반목욕장업

- (가)7세이상의 남녀를 혼욕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족탕에서 가족이 목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공동탕의 종사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공동탕의 경우 욕조안의 물은 항상 차 있도록 하고, 냉·온수는 입욕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욕실·욕조·발한실·물통·깔판·탈의실·옷장·휴게실·현관 또는 화장실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마)가족탕에서는 숙박을 위한 침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특수목욕장업

(가)7세이상의 남녀를 혼욕시켜서는 아니된다.

(나)사우나탕 및 복합목욕탕에서의 입욕자를 위한 안마시술행위를는안마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업소안에서의 윤락행위·음란행위를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우나탕 및 복합목욕탕에서는 이성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터키탕의 입욕보조자는 흉·복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도록 하여야 한다.

(마)터키탕에는 18세미만인 자와 고등학교이하의 학생을 입욕시켜서는 아니된다.

3. 이용업

가. 업소에 뚜껑있는 오물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이용사 및 보조원은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되, 하의는 무릎위가 보이게 되는 것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손님 피부에 닿는 수건은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라. 손님이 사용하는 앞가리는 흰색 기타 때가 묻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색이어야 하며 이발·머리피부손질 및 머리염색을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손님의 상체부분만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바. 청소를 자주 실시하여 머리카락이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업소안에서 윤락행위·음란행위를 묵인하거나 그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등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또는 신고필증·면허증원본·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자. 시·도지사가 정하는 휴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의료법에 의한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면도기는 1회용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타. 업소내에 이용사 및 보조원 등 종사자의 명부를 별지 제26호의 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미용업

가. 업소에 뚜껑이 있는 오물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미용사 및 보조원은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 손님 피부에 닿는 수건은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라. 손님이 사용하는 앞가리는 흰색 기타 때가 묻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색이어야 한다.

마.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바. 청소를 자주 실시하여 머리카락이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또는 신고필증, 면허증 원본, 미용요금표,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미용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시·도지사가 정하는 휴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업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의료법에 의한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업소의 표시는 허가 또는 신고된 업소명칭(상호)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유기장업

가. 전자유기장업

(1)유기장은 자주 청소하여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2)음용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3)관리인을 배치하여 업소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시·도지사가 정하는 휴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일 1회이상 실시하고,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6)성인용 전자유기장에는 출입문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7)청소년용 전자유기장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8)전자유기기구의 구조 또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9)성인용 전자유기장안의 잘 보이는 곳에 손님에게 도박행위·사행행위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기타 유기장업

(1)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사가, 주행식유기기구 또는 고정식유기기가 설치된 기타 유기장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전기기사가 매일 1회이상 유기기구에 대한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1)에 규정된 기타 유기장업외의 기타 유기장업의 경우에는 매일 1회이상 유기기구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운전자가 따로 필요한 유기기구의 경우에는 당해운전자로 하여금 정원을 초과하여 손님을 태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개시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세탁업

가.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신고필증·세탁요금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세탁요금표에 의한 세탁요금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 나. 세탁물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따라 세탁하여야 한다.
- 다. 세탁용 기계 및 기구는 수시로 손질을 하여야 한다.
- 라. 세탁물은 세탁 또는 끝손질을 끝낸 것과 끝내지 아니한 것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마. 세탁물을 세탁함에 있어서는 세탁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바. 병원등에서 말긴 질병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탁물은 세탁을 하기 전에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충분히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물의 세탁처리 과정에서 소독의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세탁업(끝손질작업만으로 하는 세탁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자중 직접세탁을 행하는 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및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아. 끝손질작업만으로 하는 세탁업소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7. 위생관리용역업

- 가. 각 사업장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신고필증 및 사업장관리 책임자의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 다. 사용장비는 수시로 점검하고 깨끗이 손질하여야 한다.
- 라.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 마.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바. 종사자에게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취급요령을 철저히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위생관리지식보급등을 위한 교육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아. 위생관리용역업에 종사하는 자중 사업장책임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및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8. 위생처리업

- 가. 시설·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다. 유통과정에서의 변질품등은 반드시 반품조치하여야 한다.
- 라. 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신고필증을 게시하여야 한다.